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농약산업 대응전략 설명회(Ⅱ)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농약업의 대응방안

국내외 시장 급격변화, 법질서 변경 요구 크게 부각
사용상 아닌 피해범위 등 경고표시 한층 강화해야

■ 김남표/ (주)PL코리아 실장

제조물책임법의 시대적 배경

생산이 중시되던 고전주의 경제학은 근대 경제사회의 뿌리로서 일정기간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여 왔으나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점차 인간 생활을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시켜 점차 국가의 정책목표는 자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인 생명과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적인 방향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유도하게 된다.

20세기 초 절대적인 국가의 지원 하에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하던 기업은 20세기 중반 들어 국내 사정 및 국제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말미암아 전통적인 법질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강한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특히 미국을 시발점으로 변화의 방아쇠를 당긴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급기야 세계 각 국으로 퍼져 그 한 축에 한국도 포함되게 된다.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4대 권리에 대한 연두교서를 필두로 현재 각 국은 그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각각에 대한 입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미 40여년 전의 미국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국가적인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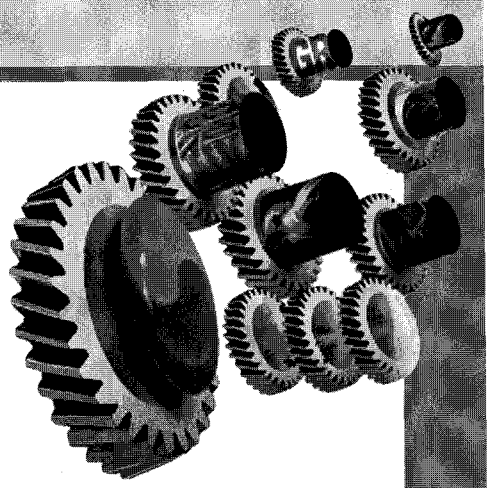

미국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4대 권리 중 하나인 『안전을 추구할 권리』가 구체화된 것이 제조물책임법이며 시장에 공급된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그 제품의 사용자 뿐만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품의 제조업자 등을 상대로 피해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구제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약의 제조물책임 추급 사례

농약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살충제를 들 수 있다. 살충제의 속성은 본질적으로 생물에 위해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제는 만약 살충제가 인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였을 경우 그 위해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제기된다.

한 예로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건으로 주정부가 살충제를 헬기로 공중에서 살포한 결과 인근 주민이 공중 살포된 살충제로 인해 실명의 장해를 입어 캘리포니아주와 살충제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조업자는 살충제의 위해성을 이미 인식하고 그 위해를 경고를 통해 고지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경고는 연방정부의 지시에 따라 제작되었기에 주민의 실명 장해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캘리포니아주 제1심 법원은 제조업자의 경고표시는 연방정부의 규제에 따른 『연방법우선의 법적용』이 필요하다 하여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판결을 파기하여 제조업자의 패소를 언도하고 있다.〔Alfonso Macias vs. The State California et al., No. BO 1479, 1994.3.14〕

본 사건을 통하여, 대부분의 농약 제조업자는 직접적인 구매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사용상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나 본 사건은 구매자도 아니며 사용자도 아닌 보통의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판결이라는 점에서 제조업자의 경고대책의 심각함이 노출되고 있다. 직접적 구매자인 주정부에 대한 경고는 이미 연방법차원에서 적시하고 있었고 실제 살충제는 주정부가 사용하였음에도 불특정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제조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농약 제조업자는 자기의 구매자에게 고지한 경고만으로는 면책의 가능성이 없다.

그 구매자가 실제로 농약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환경을 철저히 주지시켜야 할 것이며 향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여 경고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농약 제조업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농약업계의 대응방안

농약은 작물재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된 화학제품으로 일정한 효용성을 갖고 있는 반면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그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

라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범위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작물재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제품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위험성과 효용성의 관점에서 많은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약은 작물의 효용성은 확보하되 위해성은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안전과 사용자의 주의를 통해 확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요구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경고표시의 강화이며 현재와 같은 사용상의 경고가 아닌 농약이 미칠 수 있는 피해의 범위를 산정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폭넓은 사용환경의 인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농약의 살포전, 살포중, 살포후로 분류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주의와 경고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살포전의 주의사항은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긴바지 · 긴팔의 작업복을 착용하고, 안경,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구의 착용도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 살포기구의 상태를 잘 점검하여 분출구나 펌프 등의 점검, 수리를 체크하며 인근 주민에 농약 살포를 알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자연물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동물, 물고기, 새 등의 이동방법도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살포자의 신체상태가 좋지 않거나 임신 중에는 살포를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가정 내에서의 살포는 절대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표시가 기재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살포시의 주의사항으로는 그 날의 기후나 온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를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시간은 짧을수록 좋으며 작업중은 담배나 식사 등의 행위는 삼가도록 유도하며 작업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맨손으로 수리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작물이 농약으로 덮여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와 애완용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포후의 주의사항으로는 살포시 노출된 피부를 깨끗이 닦고 특히 입안과 눈 주위를 청결히 하도록 하며 의복은 반드시 갈아입도록 유도한다. 사용한 기구의 손질도 잊지 말아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농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잘 보관하며 보관하여야 할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고지할 필요가 있다.

농약은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병해충 및 잡초를 예방하여 작물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효용성은 인정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농약으로 인한 사망인구가 많다는 점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살포전의 주의사항 인식부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농약업계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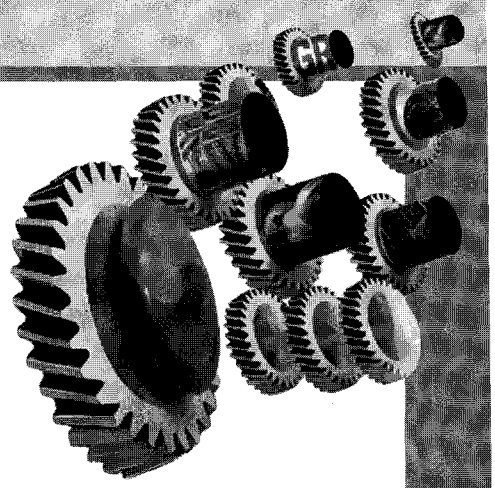

사용자와 사용자의 주변환경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이러한 피해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농약관계자의 역할

농약이 목표로 하고 있는 병해충의 박멸 외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획기적인 제품의 개발이 있다면 더 이상 농약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적 · 기술적 수준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농약의 필요성, 그리고 그 위해성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각 관련업자의 위해성 제거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명과 자연의 보호라는 커다란 사회 속의 질서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여진다.

우선 농약 제조업자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자사 제품의 사용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것이 주의표시의 강화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작은 위험까지도 경고를 통하여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사회적 책임이 제기되고 있는 시대에서 기업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의 구축은 시급하다 아니 할 수 없다.

그 다음은 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많은 농약업이 영세하다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조직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공동연구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농약을 개발한다던가 관련연구기관과의 제휴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배제할 수 없는 시대에 돌입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도 상품성위주의 판매전략을 고집하고 있는 제조업자를 계도하여야 할 위치에 협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환경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별 제조업자보다도 협회차원의 대응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개별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협회의 특성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유도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며 인간과 환경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메꾸어 줄 수 있는 협회의 노력이 보다 강화된다면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더라도 농약업계의 전망은 그리 불안스럽지는 않으리라 판단된다.

보다 우수한 상품과 보다 안전한 제품이 공급되어 한국의 농약업계를 밝혀줄 수 있으리라 믿고 농약 제조업자와 협회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해 본다. 농약정보

바로잡습니다

「농약정보」지 10월호 16쪽 표중 그로포입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담배 · 배추는 파종전까지 1회로, 양파 · 마늘은 수확 45일전까지 3회이내로 바로잡습니다.